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4
----------	------

2018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5.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8. 6. 11.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1. 제안이유

- 2018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및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금을 반영하고 2018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주요 교육시책사업 필요경비 및 시설예산 부족분 편성,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9조 8,856억원으로 기정예산(9조 1,513억원) 보다 7,343억원 증가함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
 - 증가된 세입예산은 7,343억원으로
 - 일반 재원 5,404억원
 - 목적지정 재원 1,939억원임
 - 일반 재원 5,404억원은
 - 보통교부금 5,293억원 및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2억원,
 - 자체수입 4억 4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84억원을 증액 반영함

- 목적지정 재원 1,939억원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타지원금 중 27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1,698억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우선확정을 반영함
- 목적지정 재원 조정액 △34억원을 반영함

○ 세출예산의 증감내역

〈일반재원〉

- 인건비로 총 1,568억원 편성
 -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489명) 1,379억원
 - 인건비 부족분 133억원
 - 계약제교원 인건비 15억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41억원
- 경상비는 총 90억원 편성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89억원 등
- 사업비 879억원 편성

(교육사업비 총238억원)

 - 미세먼지(공기정화장치 설치, 체육관 청소 등) 사업 69억원
 - 누리과정 지원 22억원
 - 초등돌봄교실 50실 증설사업 21억원
 - 급식실 환기 청소용역 등 11억원
 - 목적지정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납비 115억원

(시설사업비 총641억원)

 - 학교신설(8교), 교실증축(8교) 462억원
 - 급식실 신증축 및 급식시설개보수 39억원
 - 학교시설 개선 및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 등 140억
- 지방채 및 BTL상환 2,867억원을 편성함

〈목적지정 재원〉

- 추경에 274억원 편성

- 초등스포츠강사 지원, 미래형학교 환경조성 등 교육사업비 54억원
-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179억원
- BTL상환금 8억원 등

- 우선확정예산('18.5.15기준) 1,698억원 편성됨

- 무상급식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071억원
- 내진보강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109억원
- 대학입학전형지원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64억원
- 꿈을담은교실만들기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5억원 등

3.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모		9,885,510	100.0	9,151,267	734,243	8.0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824,299	58.9	5,225,012	599,288	11.5
	자치단체이전수입	3,223,845	32.6	3,100,278	123,566	4.0
	기타이전수입	24,657	0.2	22,126	2,531	11.4
	자체수입	164,081	1.7	163,639	442	0.3
	지방교육채	133,440	1.3	133,440	0	0.0
	전년도이월금	515,188	5.2	506,772	8,416	1.7
세 출	인건비	5,643,195	57.1	5,486,408	156,788	2.9
	기관운영비	43,243	0.4	43,235	8	0.0
	학교운영비	814,201	8.2	805,208	8,993	1.1
	교육사업비	2,110,384	21.3	1,949,224	161,160	8.3
	시설사업비	832,706	8.4	712,890	119,816	16.8
	지방교육채및BTL	431,001	4.4	143,523	287,478	200.3
	예비비및기타	10,780	0.1	10,780	0	0.0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8년 5월 3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1) 및 「지방재정법」 제45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음

-
-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조 1,512억 6,700만원 대비 8.0%, 7,342억 4,300만원을 증액한 9조 8,855억 1,0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액 (C=A-B)	증 감 액		증감률
			증 액	감 액	
9,885,510	9,151,267	734,243	742,064	7,821	8.0

※ 증액 및 감액은 세출예산 기준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재원 5,403억 7,800만원(세입재원의 73.6%)과 목적지정지원금 1,938억 6,500만원(26.4%)을 합한 7,34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3-2〉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합 계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이 전 수 입	자 체 수 입	지 방 교육채	순세계 잉여금	중양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기 타 이전수입		
734,243 (100.0)	540,378 (73.6)	531,520 (72.4)	442 (0.1)	0 (0.0)	8,416 (1.2)	193,865 (26.4)	67,768 (9.2)	123,566 (16.8)	2,531 (0.3)

- **일반재원**은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 및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금 교부 등에 따른 이전수입의 증액(5,315억 2,000만원), 자체수입의 증액(4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액(84억 1,600만원) 등을 반영하고자 5,40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 및 추경편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그 용도가 지정·교부된 지원금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3)에 따른 우선확정분(1,698억 700만원)과 우선 확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추경편성분(240억 5,800만원) 등 1,938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4)

〈표 3-3〉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9,885,510	9,151,267	734,243	8.0	540,378	169,807	24,058
이 전 수 입	9,072,801	8,347,416	725,385	8.7	531,520	169,807	24,058
중앙정부 이전수입	5,824,299	5,225,012	599,288	11.5	531,520	44,898	22,870
자치단체 이전수입	3,223,845	3,100,278	123,566	4.0	0	122,512	1,054
기타이전수입	24,657	22,126	2,531	11.4	0	2,397	134
자 체 수 입	164,081	163,639	442	0.3	442	0	0
지방교육채	133,440	133,440	0	0.0	0	0	0
전 년 도 금	515,188	506,772	8,416	1.7	8,416	0	0

-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4) 목적지정지원금(1,938억 6,500만원)을 우선확정분(1,698억 700만원)과 추경편성분(240억 5,800만원)으로 구분한 기준은 집행시기로 추경 성립 후 집행가능한 목적지정지원금은 우선확정하지 않고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확정 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 세출예산은 71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하여 7,34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인건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인건비 등 1,567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 **경상비**는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등 9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교육사업비**의 경우, 무상급식비(지차제 부담분) 1,090억 7,100만원 증액, 누리과정지원 추가분 94억 9,800만원 증액, 학교미세먼지관리 87억 1,200만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55억 9,800만원 증액 등 총 1,6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498억 1,600만원 증액, 학교시설증개축 102억 1,300만원 증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67억 8,600만원 증액, 학교급식환경개선 117억 2,800만원 증액 등 총 1,198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방채 및 BTL상환**은 지방채 상환 2,866억 7,200만원 증액 및 BTL임대료 8억 500만원 증액으로 총 2,87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3-4〉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A)	구성비	(B)	구성비	증감액(C=A-B)	구성비	증감률(C/B)	
합 계		9,885,510	100.0	9,151,267	100.0	734,243	100.0	8.0	
인건비	계	5,643,195	57.1	5,486,408	60.0	156,788	21.4	2.9	
	공무원인건비	4,522,362	45.8	4,371,215	47.8	151,148	20.6	3.5	
	사립학교인건비	1,120,833	11.3	1,115,193	12.2	5,640	0.8	0.5	
경상비	계	857,444	8.7	848,443	9.3	9,001	1.2	1.1	
	기관운영비		43,243	0.4	43,235	0.5	8	0.0	0.0
	학교운영비	소계	814,201	8.2	805,208	8.8	8,993	1.2	1.1
		공립	746,756	7.6	737,763	8.1	8,993	1.2	1.2
		사립	67,445	0.7	67,445	0.7	0	0.0	0.0
사업비	계	2,943,090	29.8	2,662,114	29.1	280,976	38.3	10.6	
	교육사업비		2,110,384	21.4	1,949,224	21.3	161,160	22.0	8.3
	시설사업비		832,706	8.4	712,890	7.8	119,816	16.3	16.8
지방채 및 BTL 상환	계	431,001	4.4	143,523	1.6	287,478	39.2	200.3	
	BTL 상환		105,312	1.1	104,506	1.1	805	0.1	0.8
	지방교육채		325,689	3.3	39,017	0.4	286,672	39.0	734.7
예비비 및 기타		10,780	0.1	10,780	0.1	0	0.0	0.0	

3. 세입예산 관련 검토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5조 2,250억 1,200만원) 보다 5,992억 8,800만원(11.5%)을 증액한 5조 8,242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5〉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	추경편성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824,299	5,225,012	599,288	11.5	531,520	44,898	22,8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94,641	4,598,936	595,705	13.0	529,341	43,714	22,650
보통교부금	5,049,688	4,520,346	529,341	11.7	529,341	0	0
특별교부금	144,953	78,590	66,364	84.4	0	43,714	22,650
국고보조금	26,161	24,757	1,404	5.7	0	1,184	220
특별회계입금	603,498	601,319	2,179	0.4	2,179	0	0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5조 49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4조 5,203억 4,600만원) 보다 5,293억 4,100만원
(11.7%)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 2018년 2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⁵⁾ 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산⁶⁾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정교부액(4조 5,203억 4,600만원) 보다 1,869억 800만원
이 증액 교부(4조 7,072억 5,400만원)되었고,
- 2017회계연도 내국세 초과징수로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2조 9,120억 9,300만원⁷⁾이 발생하여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3,424억 3,300만원을 추가 교부 통지⁸⁾함에 따라
총 5,293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다만,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5,293억 4,100만원 중 2,866억
7,200만원에 대해 지방채 상환 규모가 급증하는 2020년 이후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201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통보⁹⁾한 바,

5)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02.28.)

6)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주요 증감내역

기준재정수요액	1,763억 7,600만원 증	기준재정수입액	105억 3,200만원 감
교직원인건비	899억 9,100만원 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4억 3,400만원 증
재정결함보전	408억 1,600만원 증	법정전입금	109억 6,600만원 감
교육복지지원비	211억 3,100만원 증		
학교시설비	207억 5,800만원 증		
자체노력수요	17억 9,400만원 증		
유아교육비	17억 8,600만원 증		

7)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규모

구 분	세계잉여금 정산분(A+B)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금 (A) (내국세분 교부금×96%+교육세 전액)	특별교부금 (B) (내국세분 교부금×4%)
총규모	2,912,093	2,792,959	119,134
서울	350,995	342,433	8,562

8)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04.04.)

9)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02.28.)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04.04.)

〈표 3-6〉 보통교부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정교부(A) (기정예산)	확정교부(B)		추경 증감액						최종 교부액 (F=A+E) (추경예산안)	
			확정교부 증감(C=B-A)		추가교부(D)		계 (E=C+D)			
	4,707,254		186,908		342,433		529,341		5,049,688	
4,520,346	지방채 상환	가용재원	지방채 상환	가용재원	지방채 상환	가용재원	지방채 상환	가용재원	지방채 상환	가용재원
	42,694 ^{주1}	4,664,560	42,694 ^{주1}	144,214	243,978	98,455	286,672	242,669	286,672	4,763,015

주1. 42,694백만원 = 118,441백만원('18년 지방채 조기상환 확정교부액) - 75,748백만원('18년 지방채 조기상환 예정교부액)의 차액임

※ 교육부의 '18년 지방채 조기상환 예정교부 내시액(75,748백만원)을 2017회계연도 중에 조기상환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음

- 지방채상환을 제외한 보통교부금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4조 7,63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4조 5,203억 4,600만원)보다 2,426억 6,900만원(5.4%)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785억 9,000만원)보다 663억 6,400만원(84.4%)이 증액된 1,449억 5,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특별교부금 증액분(663억 6,400만원)은 우선확정분¹⁰⁾(437억 1,400만원)과 추경편성분(226억 5,000만원)으로 구분되는 바,

10)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437억 1,400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0	43,714	94	17,313	26	26,401	0	0

- 추경편성분(226억 5,000만원)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 240억 6,600만원과 기정(본) 예산에 교부예정(추정)액으로 편성하였던 특별교부금 중 실제 교부액과의 차액 조정을 위한 △14억 1,600만원¹¹⁾임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247억 5,700만원) 보다 14억 400만원 (5.7%)이 증액된 261억 6,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국고보조금 증액분(14억 400만원)은 우선확정분¹²⁾(11억 8,400만원)과 추경편성분(2억 2,000만원)으로 구분되는 바,

- 우선확정분 11억 8,400만원은 SW교육선도학교 지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을 위한 것이며, 추경편성분 2억 2,000만원의 경우 초등스포츠강사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임

11) 기정예산(본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중 실제 교부액과의 차액 조정(△14억 1,600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교부액	차액조정
합	계	10,509	9,093	△1,416
교원인사관리	교원준중풍토조성	6	0	△6
학생생활지도지원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48	39	△29
창의인성교육운영	예술중점학교지원	100	80	△20
특색교육과정운영	일반고교육역량강화	6,914	6,598	△316
학력평가관리	학생평가내실화	790	765	△25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독서인문교육활성화	20	15	△5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고졸취업지원확대	2,251	1,385	△866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선진화	9	2	△7
교육과정운영	현장적합성검토연구회운영	21	18	△3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인성체육예술교육실천및확산	350	191	△159

12) 국고보조금 우선확정분(11억 8,400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1,184	8	1,184	0	0	0	0

- **특별회계전입금**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¹³⁾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부가 예정 교부¹⁴⁾(6,013억 1,900만원) 보다 21억 7,900만원(0.4%)을 증액한 6,034억 9,800만원으로 확정 교부¹⁵⁾함에 따라 증액분을 추경 편성 요청한 것임

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 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3년(2017년~2019년) 한시의 특별회계임

14)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2017년도 교부액 조정 기초자료 제출 요청 및 2018년도 교부예정 통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699, 2017.09.27.)

1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17년도 집행잔액 반납 및 '18년도 교부액 확정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978, 2017.12.19.)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액은 3조 2,23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3조 1,002억 7,800만원) 보다 1,235억 6,600만원 (4.0%)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7〉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 재원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	추경편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23,845	3,100,278	123,566	4.0	0	122,512	1,054
법정이전수입	3,077,535	3,077,535	0	0.0	0	0	0
비법정이전수입	146,309	22,743	123,566	543.3	0	122,512	1,05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0,828	22,743	78,085	343.3	0	78,968	△883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5,481	0	45,481	순증	0	43,544	1,937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분(1,235억 6,600만원)은 모두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16)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된 전입금인 바, 기정예산(227억 4,300만원) 보다 1,235억 6,600만원(543.3%)이 증액된 1,463억 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비법정이전수입 증액분(1,235억 6,600만원)은 우선확정분¹⁷⁾ (1,225억 1,200만원)과 추경편성분(10억 5,400만원)으로 구분되는 바,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및 기타 법령 또는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따른 무상급식비 전입금 등 47건에 대해 789억 6,800만원이 우선확정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추경편성분(△8억 8,300만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위한 전입금 10억 7,700만원과 외벽개선사업에 대한 교부예정액과 실제 교부액간 차액을 조정¹⁸⁾하기 위해 △19억 6,000만원¹⁹⁾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구가 지원한 무상급식비,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9건에 대한 우선확정분(435억 4,400만원)과 학교 복합화시설, BTL원금 및 이자 지원금 7건에 대한 추경편성분(19억 3,700만원)을 합한 45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17) 비법정이전수입 우선확정분(1,225억 1,200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6	122,512	15	111,120	41	11,392	0	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7	78,968	6	67,576	41	11,392	0	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	43,544	9	43,544	0	0	0	0

18) 2018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경비보조금(조례상전출금)의 예산안(510억 2,500만원)에서 △227억 5,700만원이 감액된 282억 6,800만원으로 확정되어 확정된 예산액에 맞춰 사업을 재조정함

19) 기정예산(본예산) 편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중 실제 교부액과의 차액 조정(△19억 6,000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교부액	차액조정	비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2,800	840	△1,960	10교→3교로 조정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24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221억 2,600만원) 보다 25억 3,100만원(11.4%)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8〉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	추경편성
기타이전수입	24,657	22,126	2,531	11.4	0	2,397	134
민 이 전 수 간 입	21,613	21,495	118	0.6	0	20	98
자치단체간 이 전 수 입	3,044	631	2,413	382.4	0	2,377	36

- **민간이전수입**은 해당초 학교환경개선비(기부채납) 및 토요일과학강연회(한국연구재단) 등 총 1억 1,800만원²⁰⁾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및 성적처리를 위한 분담금(22억 5,700만원)과 전국 시·도

20) 민간이전수입 증액분(1억 1,800만원)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재 원	사 업 명	기 관 명	금액
	합	계	118
우 선 확 정	소	계	20
	토요일과학강연회	한국연구재단	12
	과학탐구활동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8
추 경 편 성	소	계	
	해당초 학교환경개선비 기부채납	주택재개발조합	98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동출제 분담금(1억 2,000만원)
 등 24억 1,300만원²¹⁾을 반영한 것임

2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증액분(24억 1,300만원) 재원구분

(단위 : 백만원)

재 원	사 업 명	기 관 명	금 액
	합	계	2,413
우 확 선 정	소	계	2,377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분담금	타 시·도교육청	120
	전국연합학력평가 분담금	타 시·도교육청	2,257
추 편 경 성	소	계	36
	독서인문교육활성화	타 시·도교육청	36

나.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1,636억 3,900만원) 보다 4억 4,200만원 (0.3%) 증액된 1,640억 8,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기타수입** 증액분(5억 2,400만원)은 공유재산 변상금²²⁾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감액분(△8,200만원)은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급식비 및 기숙사비 등 감액분(△1억 7,400만원)과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영재캠프활동비 등 증액분(9,200만원)을 반영한 것임

〈표 3-9〉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	추경편성
자 체 수 입	164,081	163,639	442	0.3	442	0	0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12,472	112,554	△82	△0.1	△82	0	0
행 정 활 동 수 입	5,453	5,453	0	0.0	0	0	0
자 산 수 입	26,418	26,418	0	0.0	0	0	0
이 자 수 입	4,108	4,108	0	0.0	0	0	0
금 용 자 산 회 수	0	0	0	0.0	0	0	0
기 타 수 입	15,629	15,106	524	3.5	524	0	0

22) 사업별 설명자료 p.19(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변상금 징수액)

다. 지난해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직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이월금)**은 84억 1,600만원으로 추경 재원(7,342억 4,300만원)의 1.7%에 해당됨
- 서울시교육청은 직전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5,151억 8,800만원) 중 98.4%, 5,067억 7,200만원을 이미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84억 1,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0〉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 세입예산 반영액		
	계(A+B)	본예산(A)	추경예산안(B)
515,188	515,188 (100.0)	506,772 (98.4)	8,416 (1.6)

※ ()는 반영비율임

4. 세출예산 관련 검토

가.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① 인건비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는 5조 6,43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5조 4,864억 800만원) 보다 2.9%, 1,567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며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의 21.4%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1〉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사유
			증감액	구성비	증감률	
합계	5,643,195	5,486,408	156,788	21.4	2.9	
정규직인건비 소계	5,382,506	5,231,341	151,165	20.6	2.9	
보수	3,346,583	3,333,276	13,307	1.8	0.4	교원 시간외근무수당 미반영 및 학교운영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분 등
법정부담금	713,322	656,331	56,991	7.8	8.7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166,322	85,455	80,867	11.0	94.6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기타	1,156,279	1,156,279	0	0.0	0.0	
계약제교직원 소계	260,689	255,067	5,622	0.8	2.2	
보수	210,307	207,109	3,199	0.4	1.5	계약제직원 보수 부족분
퇴직금 등	39,949	38,117	1,831	0.3	4.8	계약제교원 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등
처우개선비	3,815	3,223	592	0.1	18.4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 부족분 등
기타	6,618	6,618	0	0.0	0.0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비율

-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²³⁾은 2018년도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²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808억 6,700만원²⁵⁾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2〉 2018년도 상반기 교원명예퇴직 편성 및 수용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본예산 현황(A) (2017. 12월)		신청현황 (2018. 2월)	수용현황(B) (2018. 2월)		증감(B-A)	
	인원	예산액	인원	인원	집행액	인원	과부족액
합 계	835	81,734	1,143	1,143	108,563	264	26,829
공립 교원	542	57,070	870	870	87,677 ^{주1)}	196	30,607
사립 교원	293	24,664	273	273	20,886	68	△3,778

주1. 2018년 상반기 공립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 수용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액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교원보수항목에서 30,805백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

- 아울러 명예퇴직인원 증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인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부담금²⁶⁾의 경우에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바, 569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음

〈표 3-13〉 2018년도 하반기 교원명예퇴직 수용 예정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하반기 명예퇴직 예정인원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소요액(A)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B)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B-A)	1인당 명예퇴직수당 소요예상액
합 계	534	53,850	3,976	△49,874	
공립 교원	422	44,422 ^{주1)}	198	△44,224	105
사립 교원	112	9,428	3,778	△5,650	84

주1. 2018년 상반기 공립교원 명예퇴직 전원 수용에 따른 예산 변경액(30,805백만원)은 제외

23) 사업별 설명자료 p.68(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p.315(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4) 명예퇴직 대상자 :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 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5) 808억 6,700만원 = 308억 500만원(2018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중당) + 500억 6,200만원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6)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인건비 중 **정규직보수**²⁷⁾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추가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²⁸⁾에 따라 신설된 학교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13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계약제교직원인건비**²⁹⁾는 계약제 교원 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과 계약제직원 채용 증가에 따른 급여 부족액 그리고 교육공무직원과의 임금협약³⁰⁾에 따른 처우개선비 부족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6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추가 편성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교원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이미 2018년도 본예산 심사시 공립 교원의 경우 수요조사 인원보다 적은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고 있어 명예퇴직 신청자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적시³¹⁾된 바 있음
 - 특히,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제3항³²⁾에 따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되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

27) 사업별 설명자료 p.68

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1.18.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 9의 신설내용 : 공립 유·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월 30,000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 지급

29) 사업별 설명자료 p.72

30)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서(2017.12.15.)
 - 근속수당 지원대상자 확대(근속기간 3년 이상 → 1년 이상) 및 단가 인상[월5만원~35만원(3년 이상 매1년당 2만원) → 월3만원~60만원(1년 이상 매1년당 3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사기업과 이중지급 가능(지방공무원수당 규정과 동일)
 - 처우개선대상자 확대(적용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 적용기준일 현재 1년 이상)

3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p.36

3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2017.07.31. 개정)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로써 당초 예산 편성시 과소계상되거나 누락된 항목에 대해 추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편성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인바 법정·필수경비는 당초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유사한 추경 편성 요청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경상비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경상비는 8,57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8,484억 4,300만원) 보다 1.1%, 90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4〉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일재반원	목적지정지원금	
				구상비	구상비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857,444	848,443	9,001	1.2	1.1	9,001	0	0
기	관 운영비	43,243	43,235	8	0.0	0.0	8	0	0
학	교 운영비	814,201	805,208	8,993	1.2	1.1	8,993	0	0
	공립	746,756	737,763	8,993	1.2	1.2	8,993	0	0
	사립	67,445	67,445	0	0.0	0.0	0	0	0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비율

- 기관운영비의 경우, 2018년 1월 1일자로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신설에 따른 학생수용 업무 조정³³⁾으로 특정업무경비³⁴⁾ 추가

3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01.01. 시행) 개정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이적지 관리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과에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으로 조정됨

34)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지급

소요액 반영이 필요하며 학교운영비의 경우, 교육공무직원과의 임금협약³⁵⁾에 따라 처우개선비 부족액이 발생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9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③ 교육사업비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교육사업비는 2조 1,10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1조 9,492억 2,400만원) 보다 8.3%, 1,61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의 2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5〉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일재반원	목적지정지원금		
			구상비	구상비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2,110,384	1,949,224	161,160	22.0	8.3	23,751	132,013	5,395	
인적자원운용	25,303	24,985	318	0.0	1.3	70	261	△13	
교수학습활동지원	470,994	447,673	23,321	3.2	5.2	1,040	18,632	3,648	
교육복지지원	1,383,369	1,262,435	120,934	16.5	9.6	13,438	107,496	0	
보건/급식/체육활동	30,778	19,760	11,019	1.5	55.8	8,960	387	1,672	
평생교육	26,390	25,170	1,220	0.2	4.8	187	1,034	0	
직업교육	702	702	0	0.0	0.0	0	0	0	
교육행정일반	172,846	168,498	4,348	0.6	2.6	56	4,203	88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비율

35)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서(2017.12.15.)

- 근속수당 지원대상자 확대(근속기간 3년 이상 → 1년 이상) 및 단가 인상[월5만원~35만원(3년 이상 매1년당 2만원) → 월3만원~60만원(1년 이상 매1년당 3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사기업과 이중지급 가능(지방공무원수당 규정과 동일)
- 처우개선대상자 확대(적용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 적용기준일 현재 1년 이상)

㉔ 누리과정지원

○ **누리과정지원**³⁶⁾(유아교육과) 사업은 기정예산(6,016억 2,100만원) 보다 94억 9,8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 2018년도 누리과정지원비에 대한 교육부 산출액의 변동³⁷⁾에 따른 증액분(21억 7,900만원)과 2017년도 누리과정지원비 집행 잔액 반납금(73억 1,900만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3-16〉 누리과정지원 증액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추경증감	비 고
합 계		9,498	
유 아 교 육 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확정 교부에 따른 유아학비 증액분	2,179	특별회계 전 입 금
반 환 금	2017년도 누리과정지원비 집행 잔액	7,319	자체재원

㉕ 초등돌봄교실운영

○ **초등돌봄교실운영**³⁸⁾(초등교육과)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를 축소하고자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돌봄교실 500실을 연차적으로 확대³⁹⁾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50실을 증설하는데

36) 사업별 설명자료 p.199 ~ p.202

37) 2018년도 누리과정지원비 내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내시액 (A)	변경내시액 (B)	차액 (B-A)
합 계	601,319	603,498	2,179
유 아 학 비	233,775	235,954	2,179
보 육 료	367,544	367,544	0

38) 사업별 설명자료 p.234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설치비 등 2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7〉 초등돌봄교실 증액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추경증감	비 고
합 계		2,069	
인 건 비	전담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수당(50명)	507	
운 영 비	돌봄교실 운영비(50실)	62	
설 치 비	돌봄교실 설치비(50실)	1,500 ^{주1}	

주1. 돌봄교실 1실당 설치비 6,000만원 중 국고지원금 3,000만원은 추후 교부시 성립전예산 편성 예정

☐ 수영교육활성화

- **수영교육활성화**⁴⁰⁾(체육건강과)는 생존수영교육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바다와 강에서 직접 생존수영을 체험하여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2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⁴¹⁾

39)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없도록 전면 확대 추진(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04.04.)
- 2018~2022년 돌봄교실 증설계획

(단위 : 실,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 수	500	50	250	80	70	50
소 요 액	22,666	2,267	11,333	3,626	3,173	2,267

40) 사업별 설명자료 p.459

41) 2018학년도 안심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안)(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6591, 2018.04.25.)

- ▶ 서울시 : 한강사업본부 잠실한강수영장 및 주변 시설 등 자원 활용 협조
- ▶ 교육청 : 생존수영 교육과정 운영과 강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 및 제반 여건을 갖춘 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이 교육과정 직접 운영

〈표 3-18〉 수영교육활성화 증액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추경증감	비 고	
합		계	297		
인	건	비	교육지원센터 및 지도요원 인건비	45	
운	영	비	수상플로팅-폰툰 구입비 등	205	
유	형	자	산	교육기가재 구입 등	35
기		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	

☐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⁴²⁾(체육건강과)은 수업료자율화 학교⁴³⁾를 제외하고 급식실이 설치된 1,151교의 공·사립학교에 학교당 120만원을 교부하여 급식실 환기시설(배기후드, 닥트) 청소 용역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⁴⁴⁾

42) 사업별 설명자료 p.442

43) 사립초,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

44) 급식실 환기시설 자체 청소 중 추락, 미끄러짐과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 p.69

○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 급식실 대청소 및 고공작업(천정과 닥트, 배기장치 등 청소)을 실시하다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전문업체 활용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수립할 것

▶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서울시교육청, 2018.01.) p.27

－ 닥트 청소는 외부 전문업체 용역 권장

▶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서울시교육청, 2018.02.) p.8

－ 급식실 환기시설 청소 전문업체 위탁 경비 지원

☐ 학교미세먼지관리

- 학교미세먼지관리⁴⁵⁾(체육건강과)는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내체육관 청소비 지원 등을 위해 목적지정지원금 16억 7,200만원과 자체재원 70억 4,000만원을 합한 8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9〉 학교미세먼지관리 증액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추경 증감	비 고
합 계		8,712	
공기정화장치설치	소 계	6,948	
	유·초·특수학교 일반교실 공기정화장치 렌탈비 지원	2,186	자체재원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구입비 지원	548	자체재원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구입비 지원	800	서울시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구입비 지원(교당 2대)	1,528	자체재원
	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구입비 지원(교당 2대)	872	특별교부금
	초·특수학교 보건실 공기정화장치 렌탈비 지원	62	자체재원
	중·고등학교 보건실 공기정화장치 구입비 지원	952	자체재원
실내체육관 청소비지원	828교의 실내체육관 청소비 지원	1,656	자체재원
초미세먼지 유해성분 분석	교실 내 초미세먼지 공기질 측정 후 유해성 성분 분석	7	자체재원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모니터링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7	자체재원
반 환 금	공기정화장치설치 시범사업 국고 반납금 및 미세먼지마스크지원 서울시전입금 반납금	94	자체재원

45) 사업별 설명자료 p.472

- 추경 편성을 통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는 것으로 특히, 건강취약계층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일반교실 및 보건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 선정에 한계⁴⁶⁾가 있고, 공기청정기 사용시 이산화탄소가 증가된다⁴⁷⁾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교 미세먼지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산관리일반운영비

- **재산관리일반운영비**⁴⁸⁾(교육재정과)는 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⁴⁹⁾) 실내교육활동공간 및 교직원 숙소 증축을 위한 예정부지가 농지인 바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⁵⁰⁾을 납부를 하고자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46) 2018.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2018.04.) p.7
 ○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도가 높으나 학교현장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움

-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으며 학교 공기청정기 성능 인증 제도가 시작 단계임

47) 미세먼지 공포에 공기청정기 켜더니... 이산화탄소 2배↑(SBS 8시뉴스, 2018.06.06.)

48) 사업별 설명자료 p.501

49) 경기도 가평군 청풍면 모꼬지로 61 소재

50)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④ 시설사업비

-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8,327억 600만원으로 기정 예산(7,128억 9,000만원) 보다 16.8%, 1,198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의 16.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20〉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일 재 반 원	목적지정지원금			
				구성비	증감률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832,706	712,890	119,816	16.3	16.8	64,138	37,793	17,885	
학 교 신 증 설	소 계	210,891	161,075	49,816	6.8	30.9	46,269	0	3,547	
	학 교 신 설	168,055	124,063	43,992	6.0	35.5	40,445	0	3,547	
	교 실 증 축	42,836	37,012	5,824	0.8	15.7	5,824	0	0	
시 설 개 선	소 계	621,815	551,815	70,000	9.5	12.7	17,869	37,793	14,338	
	일 반 시 설	소 계	532,713	474,441	58,272	7.9	12.3	13,990	34,719	9,563
		학 교 시 설 증 개 축	82,788	72,575	10,213	1.4	14.1	4,668	1,031	4,514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433,635	386,849	46,786	6.4	12.1	8,049	33,688	5,049
	급 식 시 설	본 청 시 설 관 리	130	130	0	0	0.0	0	0	0
		교 육 지 원 청 시 설 관 리	5,483	5,483	0	0	0.0	0	0	0
		직 속 기 관 관 리	10,677	9,404	1,273	0.2	13.5	1,273	0	0
		소 계	89,102	77,374	11,728	1.6	15.2	3,879	3,074	4,775
	노 후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노 후 급 식 시 설 개 보	8,627	7,267	1,360	0.2	18.7	1,087	272	0
		노 후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23,654	23,452	202	0.0	0.9	202	0	0
급 식 실 및 학 생 식 당 신 증 축		56,821	46,655	10,166	1.4	21.8	2,589	2,802	4,775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㉔ 학교신증설(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 **학교신증설**(학교지원과) 사업은 기정예산(1,610억 7,500만원)보다 498억 1,600만원 증액된 2,108억 9,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신설**⁵¹⁾의 경우, 8개교(유 1원, 초 2교, 초중통합 1교, 중 1교, 고 1교, 특수 2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1,240억 6,300만원)보다 43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3-21〉 학교신설 추경 편성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급별	지원청별	학교명	개교일	학급수	추경증감	추경편성 사유
학 교 신 설 계 (8개교)					43,955 ^{주1}	
유	서 부	응암초유	2019. 3.	3 (활동실5실별도)	705	병설유치원 신설
초	서 부	녹원초	2018. 9.	28 (특수1, 병유3)	482	건설비 물가상승분
초	강동송파	고이초	2020. 3.	43 (특수1)	2,310	공사비 계약금
초중	강동송파	가락일중	2019. 3.	45 (초26, 중19)	19,941	공사비 부족분
중	남 부	신길중	2020. 3.	25 (특수1)	4,745	토지매입비 부족분
고	강서양천	공향고	2019. 3.	33 (특수3)	3,547	에너지제로화사업 특별교부금
특수	강서양천	서진학교	2019. 9.	22	5,290	교육과정 추가에 따른 규모 확대 및 주민이용시설 조성
특수	강남서초	나래학교	2019. 9.	22	6,935	특수 시설·설비 추가 및 주민이용시설 조성

주1. 신설된 학교의 토지 확정측량 후 면적 증가로 인한 토지정산비 3,700만원 제외

- **응암초병설유치원**⁵²⁾의 경우, 초등학교 교실 재배치 및 유휴 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7억 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가칭)서진학교**⁵³⁾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초등과정 신설⁵⁴⁾, 장애인 편의시설 규모 확대⁵⁵⁾ 등을 위한 추가 공사비⁵⁶⁾가 발생되어 2019년 9월 개교에 필요한 5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가칭)나래학교**⁵⁷⁾의 경우,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시설·설비 추가⁵⁸⁾ 및 주민이용시설⁵⁹⁾ 조성비용 증가 등으로 추가 공사비⁶⁰⁾가 발생되어 2019년 9월 개교에 필요한 6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공향고**⁶¹⁾는 에너지 제로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특별교부금)⁶²⁾ 35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 **가칭)녹원초** 등 4개교⁶³⁾의 경우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 274억 7,8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52) 위치 : 은평구 가좌로6길 20(응암3동)

53) 지적장애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9년 9월 개교 예정(강서구 가양동 소재, 구 공진초 이적지)

54) 초등교육과정 6학급 추가(16학급 → 22학급)

55) 연면적 증대(7,805㎡ → 12,587㎡), 복도폭 확대(3.5m → 5.5m), 체육관 진입부 변경(1층 → 2층) 등

56) 82억 4,000만원(추가 공사비) = 220억 8,600만원(변경 공사비) - 138억 4,600만원(당초 공사비)

57) 지체장애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9년 9월 개교 예정(서초구 염곡동 소재, 구 언남초 이적지)

58) 전실 바닥난방, 전층 경사로 설치, 수치료실, 장애인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59) 다목적강당 등 개방, 주민 체육시설 및 산책로 조성 등

60) 69억 3,500만원(추가 공사비) = 240억 8,500만원(변경 공사비) - 171억 5,000만원(당초 공사비)

61) 공향고 이전 : 강서구 방화2동 648-1 ⇒ 강서구 마곡동 731-250 일대

62) 교육부의 “eS(energy Self) 스쿨*”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시교육청의 공향고가 선정되어 지원됨

* eS(energy Self) 스쿨 : 단열 등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및 자연에너지(태양광 등) 이용 필요 에너지 자체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 학교로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단계적 도입 의무화 및 점진적 확대에 대비하여 교육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교육부 교육시설과-3876, 2016.4.29.)

63) 녹원초, 고이초, 가락일초중, 신길중

- 다만, 가칭)서진학교 및 가칭)나래학교 신설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중앙투자심사⁶⁴⁾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30%이상 증가⁶⁵⁾되어 2018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18년 5월 재심사를 통과⁶⁶⁾하였음

○ **교실증축**⁶⁷⁾의 경우, 기정예산(370억 1,200만원) 보다 5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8개교(유 1원, 초 4교, 중 3교)에 대한 건설비 등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은진초**⁶⁸⁾는 해당 학구 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교실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교실 8실을 증축하고자 당초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에서 특별교실 추가 설치를 요청하여 금번 추경을 통해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진관중**⁶⁹⁾은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교실 8실 및 특별교실 2실 증축을 위한 19억 2,000만원

64) 중앙투자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중앙투자심사 최초심사	최초 사업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변경 사업비
가칭)서진학교	2016. 12.	13,846	2018. 5.	22,086
가칭)나래학교	2017. 4.	17,150	2018. 5.	24,085

65)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교육부, 2017.06.) p.6

○ 재심사 대상사업

- (사업비 증가 사업 A)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경우 재심사

66) 2018년도 중앙투자심사 수시(긴급) 심사결과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89, 2018.05.23.)

- 서진학교 : 적정 / 나래학교 : 적정(권고 : 통학로 등 지자체 협조 방안 마련)

67) 사업별 설명자료 p.487

68) 위치 : 은평구 진관1로 21-20(진관동)

- 은평뉴타운 소재 초등학교로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생배치여건이 열악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주상복합, 10년공공임대 등)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증축

69) 위치 : 은평구 진관4로 36(진관동)

- 은평뉴타운 소재 초등학교로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생배치여건이 열악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주상복합, 10년공공임대 등)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증축

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고, 가락초 등 6개교⁷⁰⁾의 경우, 적기 교실증설을 위해 공사비 34억 2,1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3-22〉 교실증축 추경 편성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급별	지원청별	학교명	증축완료	규 모 (학급수)	추경증감	세부내역
교 실 증 축 소 계 (8개교)					5,824	
유	서 부	구현초병유	2019. 3.	1	127	활동실 및 자료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초	서 부	은진초	2019. 3.	8	483	특별교실 8실(0.5실 규모) 및 방음펜스 설치
초	서 부	가재울초	2019. 3.	4	182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초	강동송과	가 락 초	2019. 3.	60 (특1, 병유5)	1,300	복합건물 증축 공사비 잔액 반영
초	강동송과	강 덕 초	2019. 9.	43 (특1, 병유5)	1,000	교사 증·개축 공사비 잔액 반영
중	서 부	신 도 중	2019. 3.	2	32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중	서 부	진 관 중	2019. 4.	10 (일반8, 특별2)	1,920	교실증축 급식실 증축 병행
중	강동송과	송 레 중	2019. 3.	18 (일반13, 특별5)	781	일반교실 3학급 추가 및 홈베이스 설치

70) 구현초병설유, 가재울초, 가락초, 강덕초, 신도중, 송레중

☐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증개축**(교육시설안전과) 사업은 학교 내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설치하고자 827억 8,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725억 7,500만원) 보다 102억 1,300만원 증액된 것임

〈표 3-23〉 추경경정예산안 중 학교시설증개축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일체	목적지정지원금	
			구성비 ⁷¹⁾	잔액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82,788	72,575	10,213	1.4	14.1	4,668	1,031	4,514
강당겸체육관	70,448	64,594	5,854	0.8	9.1	3,556	1,031	1,267
기타증축	12,340	7,981	4,359	0.6	54.6	1,112	0	3,247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강당 겸 체육관⁷¹⁾**은 10개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위해 73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개교⁷²⁾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사업 지연 및 보류로 △14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8억 5,400만원을 제출한 것임

71) 사업별 설명자료 p.511

※ 강당 겸 체육관 보유현황(2018. 5. 기준)

학교수	보유	증축대상	증축제외
1,339	1,126	101*	120**

* 증축대상 101교 중 8교는 기확보되어 있지만 규모 협소 등 재설치 대상

** 증축제외 120교는 도시계획, 부지협소, 재개발 등으로 설치 어려움

72) 문래초 : 도시계획변경 행정처리기간 소요로 연도내 시설공사 계약불가로 시설비 △14억 2,000만원 감액
이수초 :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 결과 보류로 설계비 △7,000만원 감액

- 이 중 일반재원분(35억 5,600만원⁷³⁾)은 원목초 등 7개교⁷⁴⁾의 시설비 부족분, 부대공사비 추가 소요액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는 우선확정분(10억 3,100만원)은 예일여고와 금산초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비(각각 5억 6,400만원, 4억 6,700만원)이며
- 추경편성분(12억 6,700만원)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일촌중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24〉 강당 겸 체육관 추경 편성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별	학교명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	향 후 소요액	비 고
합 계 (12개교)		29,468	15,003	5,854	8,611	
동 부	원 목 초	2,576	1,387	1,189	0	부족분 확보 내부비품비
서 부	홍 은 초	2,676	2,332	344	0	부족분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서 부	예일여고	564	0	564	0	특별교부금
남 부	금 산 초	1,844	0	467	1,377	특별교부금 급식실 병행 추진
남 부	두 산 초	3,055	110	1,457	1,487	시설비 확보
남 부	신구로초	2,555	2,405	150	0	시설비 확보
강동송파	가 주 초	2,790	2,546	244	0	도시계획변경용역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급식실 병행 추진
강서양천	신 월 초	2,921	2,526	395	0	부족분 확보
강서양천	월 촌 중	2,930	874	1,267	789	특별교부금
강남서초	압구정초	2,459	1,193	1,266	0	부족분 확보 내부비품비
남 부	문 래 초	2,783	1,560	△1,419	2,642	도시계획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연도내 공사 불가
강남서초	이 수 초	2,315	70	△70	2,315	공유재산심의 보류로 감액

73) 35억 5,600만원 = 50억 4,500만원(추경안 증액분) - 14억 8,900만원(추경안 감액분)

74) 원목초, 홍은초, 두산초, 신구로초, 가주초, 신월초, 압구정초

○ **기타증축**⁷⁵⁾은 7개교의 특별교실, 연결통로, 복합화시설 증축을 위해 4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일반재원(11억 1,2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매봉초 등 4개교⁷⁶⁾의 체육관과 교사동 연결통로 증축을 위한 시설비이며,
- 목적지정지원금 추경편성분(32억 4,700만원)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성여고와 한강중 특별교실 증축비 20억 8,7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관악초 복합화시설 증축비 11억 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3-25〉 기타증축 추경 편성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별	학교명	사업내역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	향후 소요액	비고
합 계 (7개교)			10,900	6,441	4,359	100	
동 부	해성여고	특별교실 증축	1,217	0	1,217		특별교부금
남 부	매 봉 초	연결통로 증축	102	0	102		
북 부	신 화 초	연결통로 증축	360	0	360		
북 부	온 곡 중	연결통로 증축	250	0	250		
중 부	한 강 중	특별교실 증축	970	0	870	100	특별교부금
강동송파	신 가 초	연결통로 증축	400	0	400		
동작관악	관 악 초	복합화시설 증축	7,601	6,441	1,160		관악구 전입금

75) 사업별 설명자료 p.520

76) 매봉초, 신화초, 온곡중, 신가초

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⁷⁷⁾**(교육시설안전과)은 화장실, 전기, 냉난방 시설 등 13개 분야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3,868억 4,900만원) 보다 467억 8,600만원 증액된 4,336억 3,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6〉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증감률	일 재 반원	목적지정지원금		
						구성비 ⁷⁷⁾	우선확정	추경편성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433,635	386,849	46,786	6.4	12.1	8,049	33,688	5,049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추경 증액예산 467억 8,600만원 중 일반재원의 규모는 17.2%, 80억 4,9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 안전관리⁷⁸⁾는 46억 7,900만원(일반재원의 58.1%)이 증액 편성 요청된 것으로 석면제거 28억원⁷⁹⁾, 샌드위치판넬 제거 8억 5,700만원, 정밀점검 용역비 부족분 5억원 등을 편성한 것임
 - 기타사업은 32억 900만원(일반재원의 39.9%)이 증액 편성 요청된 것으로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 13억 9,200만원, 천이초 꿈을 담은 교실만들기 부족분 5억원, 여의도초 특별교실 증축에 따른 부대사업비⁸⁰⁾ 3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임

77) 사업별 설명자료 p.526

78) 내진보강, 석면제거, 샌드위치판넬제거, 정밀점검, 안전점검 등의 사업 포함

79) 28억원 = 64억 7,300만원(증액 편성액) - 36억 7,300만원(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취소 감액 편성분)

80) 기존교실 재배치, 증축위치 지반에 매설된 정화조 이설, 연약지반 보강 등

-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 학생 입학 등에 따라 장애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개교에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7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추정 증액예산 467억 8,600만원 중 목적지정지원금의 규모는 82.8%인 387억 3,700만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294억 7,900만원), 서울시 비법정전출금(91억 6,000만원) 및 재건축조합 기부채납금⁸¹⁾(9,800만원)임

- 교육부 특별교부금(294억 7,900만원)은 우선확정분(225억 6,800만원)과 추정 편성분(69억 1,100만원)으로 구분되는 바,

- 우선확정분(225억 6,800만원)은 내진보강(109억 1,200만원)과 지역교육현안수요(26개교⁸²⁾, 116억 5,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제출한 것임

- 추정 편성분(69억 1,100만원)은 지역교육현안수요인 창호·냉난방·외벽개선 등 15개교⁸³⁾ 교육환경개선 사업임

- 서울시 비법정전입금(91억 9,600만원)은 우선확정분(111억 2,000만원)과 추정 편성분(△19억 6,000만원⁸⁴⁾)으로 구분되는 바,

81) 행당초 본관동 냉난방개선

82) 지역교육현안수요(공립초 12교, 공립중 7교, 공립고 1교, 사립중 2교, 사립고 4교)

83) 지역교육현안수요(공립초 3교, 공립중 6교, 사립중 3교, 사립고 3교)

84) 2018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경비보조금(조례상전출금)의 예산안(510억 2,500만원)에서 △227억 5,700만원이 감액된 282억 6,800만원으로 확정되어 확정된 예산액에 맞춰 사업을 재조정하여 기정예산(본예산) 편성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중 외벽개선사업을 실제 교부액과의 차액 조정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교부액	차액조정	비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2,800	840	△1,960	10교→3교로 조정

- 우선확정분(111억 2,000만원)은 재난대비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성능평가 3억 3,000만원과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37억 1,000만원, 꿈을 담은 교실 35억원, 기타 교육 환경개선 등 186개교에 대해 시설개선을 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노후시설개선) 추경 편성 요청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단위사업	물 량	추 경 증 감 내 역				
		증감액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구성비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501	46,786	8,049	100.0	33,688	5,049
화 장 실 개 선	88	5,090	△476	△5.9	5,566	0
전 기 시 설 개 선	72	790	△908	△11.3	1,304	394
냉 난 방 개 선	6	899	△5	△0.1	365	539
창 호 개 선	13	7,315	87	1.1	3,153	4,075
외 벽 개 선	19	733	271	3.4	2,087	△1,625
소 방 시 설 개 선	3	75	75	0.9	0	0
방 수 공 사	8	219	219	2.7	0	0
바 닥 개 선	5	△392	△800	△9.9	408	0
도 장 공 사	8	84	54	0.7	30	0
외 부 환 경 개 선	3	△91	△91	△1.1	0	0
기 타 사 업	145	13,993	3,209	39.9	9,118	1,666
장 애 인 편 의 시 설	12	2,150	1,735	21.6	415	0
안 전 관 리 ^{주 1}	119	15,921	4,679	58.1	11,242	0

주1. 내진보강, 석면제거, 샌드위치판넬제거, 정밀점검, 안전점검 등을 포함

㉔ 학교급식환경개선

-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HACCP⁸⁵⁾시스템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891억 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773억 7,400만원) 보다 15.2%, 117억 2,800만원을 증액한 것임

〈표 3-28〉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증감률	일 재 반 원	목적지정 지원금	
			구성비	구분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89,102	77,374	11,728	1.6	15.2	3,879	3,074	4,775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23,654	23,452	202	0.0	0.9	202	0	0
노 후 급 식 시 설 개 보 수	8,627	7,267	1,360	0.2	18.7	1,087	272	0
급식실 및 학생 식 당 신 증 축	56,821	46,655	10,166	1.4	21.8	2,589	2,802	4,775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조리기구교체및확충⁸⁶⁾**(체육건강과)은 기정예산(234억 5,200만원) 보다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연신초 등 3개교⁸⁷⁾의 조리기구 확충비 3억 4,400만원 증액 및 2017년도 긴급예산 지원 등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된 4개교의 노후조리기구교체비 △1억 4,200만원 감액⁸⁸⁾과 본예산 편성 시 착오입력교를 정정⁸⁹⁾하고자 하는 것임

85)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86) 사업별 설명자료 p.444

87) 연신초(2억 2,000만원), 금동초(1억 1,400만원), 흥대부여교(1,000만원)

88) 감액 내역

▶ 면동초 : 식기소독보관고외 3종 구입 △1,100만원 ▶ 진농중 : 국술외 6종 구입 △1,700만원
▶ 금천초 : 식기세척기외 25종 구입 △9,300만원 ▶ 광양교 : 오븐기외 2종 구입 △2,100만원

○ **노후급식시설개보수**⁹⁰⁾(교육시설안전과) 편성액은 8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72억 6,700만원) 보다 13억 6,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인 바

- 일반재원분(10억 8,700만원)은 지난연도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개교⁹¹⁾ 사업 부족분 3억 5,300만원을 증액하며, 청량중 등 4개교⁹²⁾의 사업취소로 인한 △2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임

- 우선확정분(2억 7,200만원)은 급식실 타일·천장 보수, 보일러·송풍기 교체 등 13개교의 노후급식시설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전입금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⁹³⁾(교육시설안전과) 편성액은 568억 2,100만원으로 16개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기정예산(466억 5,500만원) 보다 10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일반재원분(25억 8,900만원)은 월계초의 설계비 및 보상비(8,800만원)와 북가좌초 등 8개교⁹⁴⁾의 공사비(25억 100만원)

89) 정정 내역

▶ 자양초 가스그릴외 2종구입(△2,700만원) → 자양고 : 가스그릴외 2종구입(2,700만원)

90) 사업별 설명자료 p.563

91) 사업 증액 내역

▶ 동대부고 : 냉난방시설개선(전기선로비용) 부족분 1,900만원 ▶ 중현초 : 급식실설치공사 부족분 3억 3,400만원

92) 사업 감액 내역

▶ 청량중 : 노후급식시설개보수(가스배관 및 급식실환경개선 등) △18,400만원 ⇒ 학교 전면보수 희망으로 취소

▶ 가주초 : 노후급식시설개보수(온수탱크교체 등) △1,100만원 ⇒ 급식시설 증축계획으로 취소

▶ 묘곡초 : 노후급식시설개보수(냉난방기확충) △1,100만원 ⇒ 급식실증축예산 반영으로 취소

▶ 오주중 : 노후급식시설개보수(바닥및트렌치교체) △2,300만원 ⇒ 학교 급식실증축 희망으로 취소

93) 사업별 설명자료 p.552

※ 학생식당 보유현황(2018. 5. 기준)

급 별	계	초	중	고	특수
학교수	1,328(100.0)	597	383	322	26
보유학교수	976(73.5)	330	309	314	23
미설치교수	352(26.5)	267	74	8	3

이고, 추경편성분(19억 3,1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은평초 등 7개교⁹⁵⁾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비로 확인됨

〈표 3-29〉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추경 편성 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명	설립별	학교명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	향 후 소요액	비 고
합 계 (16개교)			22,270	10,636	10,166	1,467	
서 부	공 립	북가좌초	2,872	2,355	517	0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서 부	공 립	성 산 중	1,970	1,925	45	0	민원해소 방음벽 설치 등 사업비 증가
서 부	공 립	연 신 초	1,111	806	305	0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잔여분
서 부	공 립	은 평 초	1,104	50	1,054	0	특별교부금
서 부	공 립	진 관 중	330	0	330	0	학생식당 확충
남 부	공 립	문 백 초	1,683	1,443	240	0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잔여분 등
남 부	공 립	안 천 중	1,599	834	765	0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잔여분 등
북 부	공 립	불 암 초	1,714	0	1,714	0	특별교부금
북 부	공 립	불 암 중	1,807	1,757	50	0	폐기물, 석축보강 등 사업비 증가
북 부	공 립	월 계 초	1,239	0	88	1,151	설계비 체육관 증축 병행
북 부	공 립	창 북 중	1,716	1,466	250	0	사업비 부족분 반영
북 부	공 립	창 원 초	782	0	782	0	특별교부금
강동송파	공 립	가 주 초	1,381	0	1,381	0	특별교부금
강동송파	사 립	상 일 미디어고	1,168	0	1,168	0	특별교부금
강서양천	공 립	방 화 중	306	0	306	0	특별교부금
강서양천	공 립	영 도 초	1,488	0	1,172	316	특별교부금

94) 북가좌초, 성산중, 연신초, 진관중, 문백초, 안천중, 불암중, 창북중

95) 은평초, 불암초, 창원초, 가주초, 상일미디어고, 방화중, 영도초

⑤ 지방교육채상환

- **지방교육채상환**⁹⁶⁾ 편성액은 3,25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389억 3,100만원) 보다 736.4%, 2,86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의 39.0%에 해당함

〈표 3-30〉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교육채상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증감률	일 재 반 원	목적지정지원금	
			구성비 ^{주1)}				우선확정	추경편성
지방교육채상환	325,603	38,931	286,672	39.0	736.4	286,672	0	0
원 금 상 환	290,406	0	290,406	39.6	순증	290,406	0	0
이 자 상 환	35,197	38,931	△3,734	△0.5	△9.6	△3,734	0	0

주1.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원금상환의 경우, 교육부가 2018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⁹⁷⁾ 및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⁹⁸⁾ 통지 시 지방채 조기상환액으로 내시한 2,866억 7,200만원⁹⁹⁾과 이자상환 감액 편성분 37억 3,400만원을 합하여 지난 2015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를 우선 상환하고자 2,904억 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이자상환의 경우,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기발행된 지방교육채 이자납부액이 감소된 바 기정예산(389억 3,100만원) 보다 △37억 3,400만원 감액 편성(351억 9,700만원) 요청한 것임

96) 사업별 설명자료 p.506

97)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02.28.)

98)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04.04.)

99) 286,672백만원 = 42,694백만원('18년도 확정 보통교부금 중 지방채조기상환분) + 243,978백만원('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중 지방채조기상환분)

○ 추경이후 2018년도말 지방교육채 (예정)잔액¹⁰⁰⁾은 2017년도말 (1조 3,261억 1,000만원) 보다 △11.8%, 1,569억 6,600만원 감소¹⁰¹⁾된 1조 1,691억 4,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3-31〉 지방교육채 2018년도말 (예정)잔액

(단위 : 백만원)

발행연도	사업명	2017년말 잔액	2018년도 증감(예정)		2018년말 (예정)잔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발행(A)	상환(B)		최초	최종	
합 계		1,326,110	133,440	290,406	1,169,144			
2014	2014 학교신설	59,514			59,514	2020	2029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09년 공자금인수 지방채 차환	106,209			106,209	2020	2029	
2015	교원명예퇴직	256,175		256,175	0	2021	2030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68,763	2021	2030	
	교부금차액보전	61,974			61,974	2021	2030	
	2015 학교신설	152,410		34,231	118,179	2021	2030	
2016	교육환경개선	217,414			217,414	2022	2031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152,638	2022	2031	
	2016 학교신설	51,013			51,013	2022	2031	
2018	교육환경개선		133,440		133,440	2024	2033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100) 2018년도말 지방채 잔액 = 2017년도말 지방채 잔액 + 2018년도 중 지방채 증감액*

*2018년도 중 지방채 증감액 = 2018년도 발행액 - 2018년도 원금상환액

101) 지방교육채 잔액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지방교육채 잔액	1,169,144	1,326,110	1,565,666	1,188,295	373,226	
전년 대비	증감액	△156,966	△239,556	377,371	815,069	62,004
	증감률	△11.8	△15.3	31.8	218.3	19.9

- 다만,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검토하면, 지방교육채의 상환 조건은 모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8년도에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원리금 상환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표 3-32〉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C=A+B)		원금(A)	이자(B)	비 고
		전년대비 증감률			
2019	29,121		0	29,121	
2020	45,693	56.9	16,572	29,121	2014년 발행 원금상환 시작
2021	90,115	97.2	61,463	28,652	2015년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2	130,622	45.0	103,568	27,054	2016년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3	128,094	△1.9	103,568	24,526	
2024	138,913	8.5	116,912	22,001	2018년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5	136,000	△2.1	116,912	19,088	
2026	133,089	△2.1	116,912	16,177	
2027	130,177	△2.2	116,912	13,265	
2028	127,265	△2.2	116,912	10,353	

-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채에 대해 자체부담 없이 전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하여도, 보통교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될 수밖에 없어 교육재정의 부담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⑤ 사업내역 변경 등에 따른 조정요청사업

-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사업내역 변경, 집행주체 변경 등의 사유로 5건, 5억 5,700만원(△5억 5,700만원)에 대하여 증감 조정을 요청하였음

〈표 3-33〉 사업내역 변경 등에 따른 조정요청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주관부서	사업명	추경증감		조정요청사업 내역	사업 설명자료
		증액	감액		
합 계		557	△557		
교육혁신과	문화예술지원	2	△2	사업 진행 주체 변경 (교육지원청→본청 주관부서)	p.164
교육혁신과	협력종합예술학교	470	△470	협력종합예술활동 강사비 증액 시설(연습장,공연장)구축 지원비 감액	p.172
초등교육과	초등교원연수지원	37	△37	사업운영방식 변경 (위탁연수→국외연수)	p.215
중등교육과	중등교원연수지원	37	△37	사업운영방식 변경 (위탁연수→국외연수)	p.302
진로직업교육과	맞춤식진로교육	11	△11	진로체험실무사 채용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낙찰차액 감액)	p.407

⑥ 전년도 불용사업 중 필수사업 증액 편성

-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 결산상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업, 또는 집행잔액 중 교육부에 반환하지 않고 사용(이월집행)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 등인 바, 금번 추경안을 통해 8건, 19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표 3-34〉 2017년도 불용사업 중 필수사업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주관부서	세 부 사 업	추경증감	내 역	재원
합 계		1,936		
대 변 인	교육정책홍보	43	행복한 교육 간행물 구독비	특별교부금
정책·안전 기획관	학생 생활 지도 지원	300	교실형안전체험관설치지원	"
교육 혁신과	교육과정운영	73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147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	"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 시설 교육환경개선	415 ^{주1}	한울중, 신원초 장애인편의시설	"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 시설 교육환경개선	610 ^{주2}	중동초 장애인편의시설 외 3건	"
교육시설 안전과	직 속 기 관 시 설 관 리	160 ^{주2}	교육연구정보원 외벽보수(지역현안)	"
교육시설 안전과	직 속 기 관 시 설 관 리	188 ^{주2}	교육연구정보원 외벽보수(재해대책)	"

주1. 특별교부금 1억이상 집행잔액 교육부 사용승인신청 반영분

주2. 특별교부금 1억미만 집행잔액 자체집행계획 수립분

- **행복한 교육 간행물 구독비**¹⁰²⁾는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행복한 교육’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행대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 위해 4,3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에서 동 건에 대한 특별교부금(4,300만원)을 교부하고 집행 후 결과 보고하라는 공문¹⁰³⁾을 시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미집행한 것으로 교육청의 예산편성 오류를 추경을 통해 사후 보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 요청된 예산액은 승인하되 주의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교실형안전체험관설치지원**¹⁰⁴⁾(정책·안전기획관)은 2017년도 교육부 공모 대상 사업(3교)으로 선정되어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컨설팅) 일정에 따라 2018년도 공모 대상 사업(2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3억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¹⁰⁵⁾(체육건강과)은 2017년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인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하지 말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라는 교육부 방침¹⁰⁶⁾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서 불용처리된 1억 4,7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출예산으로 산입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102) 사업별 설명자료 p.31

103) 교육부 홍보담당관-949(2017.04.06.)

104) 사업별 설명자료 p.50

105) 사업별 설명자료 p.448

106) 2017년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에 대한 2018년 사업 추진 방향 안내 (2018년 4월 12일 시·도 담당관 회의)

(2) 목적지정지원금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그 용도가 지정·교부된 목적지정지원금은 1,938억 6,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재원(7,342억 4,300만원)의 26.4%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35〉 목적지정지원금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역	추경증감
합계		193,865
①우선확정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169,807
②추경편성	국고보조금, 특교교부금, 기타지원금, 전입금	27,434
③차액조정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	△3,376

①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

-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사업의 경우, 189건, 1,698억 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¹⁰⁷⁾ 및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9조¹⁰⁸⁾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금번 추경에 의무적으로 반영된 것임

107)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108)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p.3)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표 3-36〉 목적지정지원금 중 우선확정 재원 구분

(단위 : 건, 백만원)

재 원		건 수	우선확정액
합 계		189	169,807
중앙정부이전수입	국 고 보 조 금	8	1,184
	특 별 교 부 금	120	43,714
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7	78,968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	43,544
기타이전수입	기 타 지 원 금	3	20
	전 입 금	2	2,377

○ 우선확정사업 중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무상급식 외 13개 사업, 1,386억 5,100만원으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우선확정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 **무상급식**¹⁰⁹⁾(체육건강과)은 학교급식행정 간소화를 위한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2017년 9월)시행¹¹⁰⁾에 의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된 사업비 1,070억 9,1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임

- **내진보강사업**¹¹¹⁾(교육시설안전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시설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난 5월 예산총칙에 따라 우선확정하고 금번 추경을 통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109억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임

109) 사업별 설명자료 p.479

110)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시행 계획 알림(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15256, 2017.09.12.)

111) 사업별 설명자료 p.526

- **학교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¹¹²⁾(교육재정과)은 서울시로 부터 전입된 2018년도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비 29억 9,800만원을 우선 확정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임

〈표 3-37〉 목적지정지원금 중 우선확정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재 원	세 부 사 업	사업내역	우선확정액
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	58,156
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	38,770
3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편경개선	내진보강사업	10,912
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	6,100
5	특별교부금	대입수험능력시험	대입전형종합시스템 및 대입상담센터 운영 등	4,789
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기중급식비지원	무상급식	4,066
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시설편경개선	꿈을담은교실만들기	3,500
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	학교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2,998
9	특별교부금	학교급식환경개선	불암초, 창원초 급식비 증축	2,496
10	전입금	학력평가관리	2018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2,257
11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편경개선	오정초, 구일중 창호개선	1,335
12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편경개선	환일고 교실 및 복도 환경개선	1,138
13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편경개선	인현초, 신림초 창호교체	1,070
14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편경개선	신석초, 홍제초 기타사업	1,065

112) 사업별 설명자료 p.504

② 목적지정지원금 추경편성

- 목적지정지원금 추경편성은 목적지정지원금 중 「지방재정법」 제 45조¹¹³⁾에 따른 우선확정을 하지 않고 금번 추경안에 편성·의결 후 집행 예정인 사업으로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외 33건, 274억 3,400만원임

〈표 3-38〉 목적지정지원금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역	추경증감
합 계		27,434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외 9건	20,12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미래형학교환경조성 외 14건	3,94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비법정)	민간투자사업상환(BTL원금, BTL이자) 학교시설증개축(관악초)	1,93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비법정)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외 2건	1,077
국고보조금	초등스포츠강사지원	219
기타지원금	행당초 냉난방개선(재개발조합지원금)	98
전입금	독서인문교육활성화	36

11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목적지정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 중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스마트교육지원 외 9개 사업, 166억 1,700만원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한 것임

〈표 3-39〉 목적지정지원금 중 추경편성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재 원	세 부 사 업	사업내역	우선확정액
1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 교 신 증 설	학교신설(공항공)	3,547
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스 마 트 교 육 지 원	미래형학교환경조성 - 초·중학교 무선 인프라 확충	3,114
3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	1,537
4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급식환경개선	가주초(급식실 증축)	1,381
5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 교 시 설 증 개 축	월촌중(강당 겸 체육관)	1,267
6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 교 시 설 증 개 축	혜성여고(특별교실 증축)	1,217
7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급식환경개선	영도초(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172
8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급식환경개선	상일미디어고(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168
9	기 초 자 치 단체전입금	학 교 시 설 증 개 축	관악초(기타증축)	1,160
10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급식환경개선	은평초(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1,054

③ 목적지정지원금 차액조정(편성액과 실제 교부차액 조정)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 시행되는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목적지원금 포함)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고, 학교별 교부예정액을 사전에 안내하여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회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2018년도 본예산에 144개 사업, 1,392억 8,8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초 본예산 편성 예산액과 당해연도의 실제 교부액 간 차액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을 통해 11건, △33억 7,6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40〉 목적지정지원금 차액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세 세 부 사 업	가정예산 (A)	교부액	추 증 경 감 (B)	추 경 예산안 (A+B)
합 계			13,309	9,933	△3,376	9,933
특 교 부 금	교원인사관리	교 원 존 중 풍 토	6	0	△6	0
	학 생 생 활 지 도 지 원	체 험 위 주 안 전 교 육 시 범 학 교 운 영	48	39	△9	39
	창 의 인 성 교 육 운 영	예 술 중 점 학 교 지 원	100	80	△20	80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일 반 고 교 육 역 량 강 화	6,914	6,598	△316	6,598
	학 력 평 가 관 리	학 생 평 가 내 실 화	790	765	△25	765
	독 서 논 술 교 육 활 성 화	독 서 인 문 교 육 활 성 화	20	15	△5	15
	특 성 화 고 취 업 역 량 강 화	고 졸 취 업 지 원 확 대	2,251	1,385	△866	1,385
	교원연수지원	교 원 연 수 선 진 화	9	2	△7	2
	교육과정운영	현 장 적 합 성 검 토 연 구 회 운 영	21	18	△3	18
	현장중심장학 활동 지원	인 성 체 육 예 술 교 육 실 천 및 확 산	350	191	△159	19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외 벽 개 선	2,800	840	△1,960	840

나. 세출예산 감액 관련

- 금번 추경의 감액 편성 요청한 사업은 23개 사업 △78억 2,1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감액을 요청한 사업은 11개 사업(△74억 4,500만원)으로 확인됨¹¹⁴⁾

〈표 3-41〉 감액편성 사업현황(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소관부서
					(A-B)	비율	
교육 사업비	현 장 중 심 장학활동지원	인성체육예술교육 실현및확산(특교)	191	350	△159	△45.4	초등교육과
	문 화 예 술 교육활성화	제2서울창의 인성교육센터	1,244	1,486	△242	△16.3	교육혁신과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일 반 고 교 육 역량강화(특교)	6,598	6,914	△316	△4.6	중등교육과
	특 성 화 고 취업역량강화	고 졸 취 업 지원확대(특교)	1,385	2,251	△866	△38.5	진로직업 교 육 과
	특 성 화 고 장학금지원	특 성 화 고 무상교육비지원	31,735	33,202	△1,467	△4.4	진로직업 교 육 과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관리	기 동 점 검 보 수 반 운 영	3,003	3,253	△250	△7.7	교육시설 관리본부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화 장 실 개 선 (전 면)	22,418	22,544	△126	△0.6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화 장 실 개 선 (부 분)	7,893	8,244	△351	△4.3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바 닥 개 선	14,791	15,591	△800	△5.1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30,262	31,170	△908	△2.9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외 벽 개 선 (서울시전입금)	840	2,800	△1,960	△70.7	교육시설 안 전 과

114)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4363(2018.06.04.)

(1) 교육사업비

- **인성체육예술교육실천및확산(특별교부금)**¹¹⁵⁾(초등교육과)은 본예산(3억 5,000만원) 대비 $\Delta 45.4\%$, $\Delta 1$ 억 5,900만원을 감액한 1억 9,1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인성교육 전문인력 연수 및 활용 사업비는 $\Delta 2$ 억 6,800만원 감액되고, 초등교원수학전문성 집중향상연수 사업비는 1억 900만원 증액되어 총 $\Delta 1$ 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일반고교육역량강화(특별교부금)**¹¹⁶⁾(중등교육과)는 본예산(69억 1,400만원) 대비 $\Delta 4.6\%$, $\Delta 3$ 억 1,600만원을 감액한 65억 9,8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감교부되어 학교회계 전출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당초 본예산에서 $\Delta 3$ 억 1,600만원 감액편성하고자 한 것임

- **고졸취업지원확대(특별교부금)**¹¹⁷⁾(진로직업교육과)은 본예산(22억 5,100만원) 대비 $\Delta 38.5\%$, $\Delta 8$ 억 6,600만원을 감액한 13억 8,5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1억 5,900만원 증액되고, 취업선도 학교 운영 사업비는 $\Delta 10$ 억 2,500만원 감액하여 총 $\Delta 8$ 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115) 사업별 설명자료 p.240

116) 사업별 설명자료 p.266

117) 사업별 설명자료 p.428

- 교육청의 자체재원인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¹¹⁸⁾(진로직업교육과)은 본예산(332억 200만원) 대비 △4.4%, △14억 6,700만원을 감액한 317억 3,5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특성화고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수가 본예산 편성 인원 대비 입학금 지원대상은 △627명 감소, 수업료 지원대상은 △1,258명이 감소¹¹⁹⁾되어 △14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시설사업비

- **기동점검 보수반운영**¹²⁰⁾(교육시설관리본부)은 본예산(32억 5,300만원) 대비 △7.7%,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30억 3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기동반 인력 감소(43명→41명) 및 기동반 운영변경(수목가지치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당초 본예산보다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118) 사업별 설명자료 p.425

119)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반영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본예산(학생수)(A)	추경예산(학생수)(B)	증감(학생수)(B-A)
입학금	9,541	8,914	△627
수업료	28,514	27,256	△1,258

120) 사업별 설명자료 p.631

다.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¹²¹⁾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¹²²⁾ 및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¹²³⁾에도 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¹²⁴⁾에 따라 수정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
- 121)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 14. 생략
- 122)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2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24)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3.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484
----------	------

제출연월일 :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특수학교 신설 추진과 돌봄교실 확충, 미세먼지예방 등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9,885,510	100.0%	9,151,267	734,243	8.0%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824,299	58.9%	5,225,012	599,288	11.5%
	자치단체이전수입	3,223,845	32.6%	3,100,278	123,566	4.0%
	기 타 이 전 수 입	24,657	0.2%	22,126	2,531	11.4%
	자 체 수 입	164,081	1.7%	163,639	442	0.3%
	지 방 교 육 채	133,440	1.3%	133,440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515,188	5.2%	506,772	8,416	1.7%
세 출	인 건 비	5,643,195	57.1%	5,486,408	156,788	2.9%
	기 관 운 영 비	43,243	0.4%	43,235	8	0.02%
	학 교 운 영 비	814,201	8.2%	805,208	8,993	1.1%
	교 육 사 업 비	2,110,384	21.3%	1,949,224	161,160	8.3%
	시 설 사 업 비	832,706	8.4%	712,890	119,816	16.8%
	지방교육채및BTL	431,001	4.4%	143,523	287,478	200.3%
	예 비 비 및 기 타	10,780	0.1%	10,780	0	0.0%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